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158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고, 음주측정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교통안전시설을 운영하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21. ~ 5. 31.)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법 제4조의2제2항”을 “법 제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4조의2)의 제목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로 한다.

제8조의2(중전의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제28조를 제28조의2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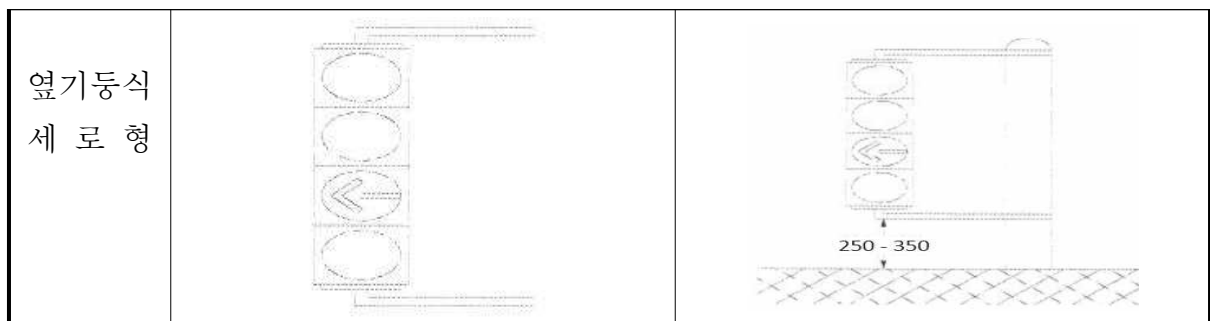
1.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 이 경우 입 안의 잔

류 알코올을 행귀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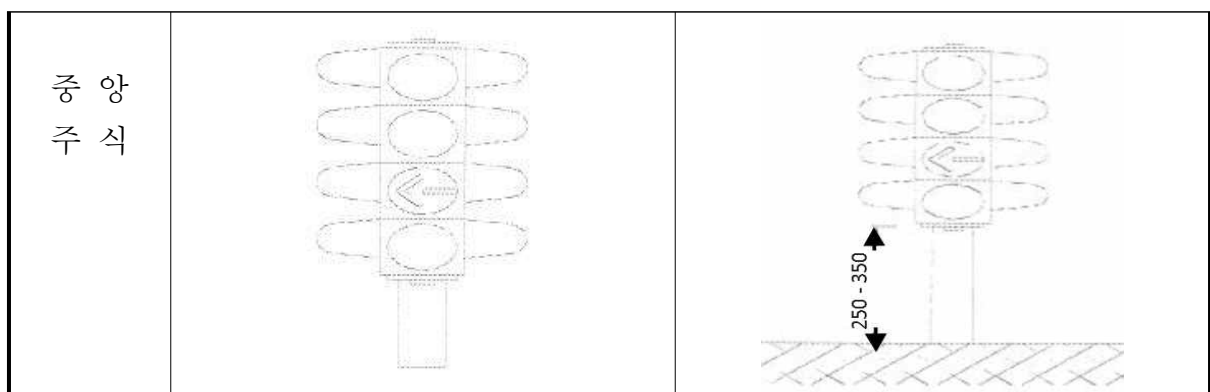
2.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운전자가 처음부터 제1호에 따른 호흡조사
에 의한 측정이 아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나, 호
흡조사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에 동
의하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② 그 밖에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1 옆기둥식 세로형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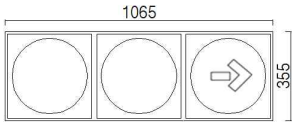


별표 1 중앙주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 차량 신호등 중 “우회전 삼색등”을 “세로형 우회전 삼색
등”으로 하고, 차량 신호등의 세로형 우회전 삼색등(종전의 우회전 삼

색등)란 위에 가로형 우회전 삼색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량 신호등	가로형 우회전 삼색등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	-------------------	---	--

별표 3 제1호 차량 신호등 중 경보형 경보등의 설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학교 앞 30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의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에 설치한다. · 다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고 차량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교차로의 주도로에는 황색, 부도로에는 적색으로 설치한다. 다만, 통행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도로와 부도로 모두 적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차량 통행이 빈번한 철길건널목에 적색으로 설치한다. · 장애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주의표지와 같이 황색으로 설치한다. · 신호기가 급커브·곡선구간에 설치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신호기 예고표지와 같이 황색으로 설치한다. · 도로 곡선부 등에서 시선유도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동일 색상의 신호등 2개를 좌우로 연달아 설치할 수 있다.
--

별표 3 제1호 차량 보조등의 설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해 도로 측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로중앙에도 설치할 수 있다.
·보조신호등은 주신호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에 라목 중 “있다.”를 “있고, 이 경우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은 [별표 6] 일련번호 407의2부터 407의4까지와 같다.”로 하고, 바목1) 중 “남은 보행시간을”을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이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으로 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우회전 삼색등은 신호등의 상부에 우회전 신호등 표지([별표 6] 일련번호 407의2)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4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적색(적색X표) 및 녹색(녹색 하향 화살표)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좌로부터 적색 X표·녹색 하향 화살표의 순서로 한다.	위로부터 적색·녹색의 순서로 한다.
--	-------------------------------	---------------------

별표 6 I. 일반기준 제2호나목(1) 중 “정차·주차금지표시”를 “정차·주차금지표시, 정차금지지대표시, 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의 테두리와 어

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로 하고, 같은 목(3)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하고, “빨간색”을 “빨간색 또는 흰색”으로 한다.

별표 6 I. 일반기준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지명 등 안내를 위한 문자 설치기준

(1) 진행 방면 및 방향별 진행 금지를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함께 문자로 행정구역명·공공시설명·도로명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표지규칙」의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안내표지에 사용되는 문자와 노면표시를 일치시켜 설치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하천·호수·명승고적·주요 관광지·고속철도역 및 공항 등 친숙하게 사용되는 지명 및 시설명과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에 따른 차종(예시: 버스, 화물차, 승용차 등), 비상주차를 위한 시설명(예시: 줄임쉘터, 비상주차대), 고속도로진·출입 관련(예시: 하이패스, 표 받는 곳) 내용을 문자로 차로 폭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 II. 개별기준 제1호나목 133의 표시하는 뜻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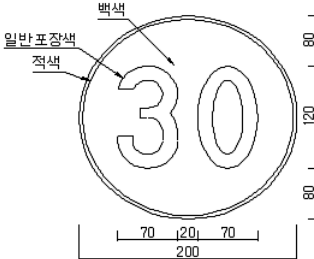
·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 음을 알리는것	·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 행로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
·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놀이터	·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출입구로부 터 1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에 설치
	·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 전 200미터 이내

등 어린이 보호지점 및 어린이 보호구역이 부근에 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우측에 설치
--------------------------------------	----------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4호나목에 407의2, 407의3, 407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7의2	우회전 신호등 표지		· 우회전 신호등임을 표시하는 것	· 우회전 삼색등 상부에 부착·설치
407의3	신호등 방향 표지		· 특정 방향(차량)의 신호등임을 표시하는 것	· 신호등 상부 또는 지주에 부착·설치
407의4	신호등 보조장치 표지		· 신호등 보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것	· 신호등 보조장치가 설치된 지주에 부착·설치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5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518	속도제한표시 (보호구역)		·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안에서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안에 설치 · 도로 노면에 미끄럼방지포장(빨간색)한 경우에는 바탕색은 포장색, 테두리와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치
-----	---------------	---	-------------------------------------	--

--	--	--	--	--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5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4	정 차 금 지 지 대 표시		·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노란색으로 설치
-----	----------------------	--	--	---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532의 설치기준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 · 4m 미만의 도로에는 좌우 통행방향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 가능 · 교차로에서는 대각선으로 설치 가능 · 중간에 보행섬을 두고 설치 가능 ·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532의2의 설치기준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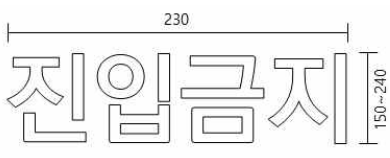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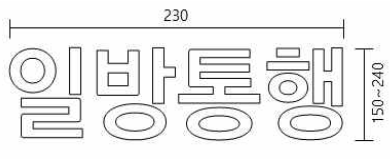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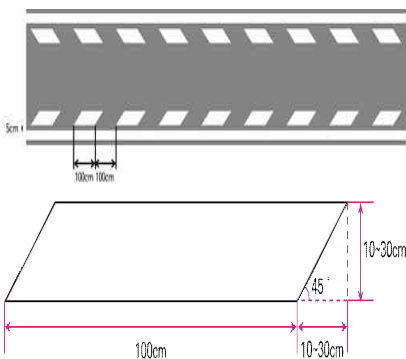
- 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
- 횡단보도의 폭은 4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표시
- 도로의 형태에 따라 횡단보도의 방향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533의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한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된 도로에서 횡단보도(오르막 경사면 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임을 표시하는 것	·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횡단보도의 형태 및 높이는 ‘블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	--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에 535의3, 536의4, 536의5, 546, 547, 54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5의 3	자 거 보 행 자 겸 용 도 로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일련번호 303)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
536의 4	보 호 구 역 기 점 표 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일련번호 536), 노인보호구역 표시(일련번호 536의2), 장애인보호구역 표시(일련번호 536의3)와 함께 설치 ·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 도로 포함)는 보호구역 종점(일련번호 536의5)과 함께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 ·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각 차로에 설치 · 테두리의 색상은 노란색,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치
536의 5	보 호 구 역 종 점 표 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 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설치 ·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 도로 포함)는 보호구역 기점표시(일련번호 536의4)와 함께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 ·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각 차로에 설치 · 테두리의 색상은 노란색,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치

546	진 입 금 지 표시		· 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구역, 구간, 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진입금지 표지(일련번호 211)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
547	일 방 통 행 표시		· 도로가 일방통행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노면 중앙에 설치 · 일방통행 표지(일련번호 326, 327, 328)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
548	감 속 유 도 표시		· 차량의 감속이 필요한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 도로의 연결로(편도1차로)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별표 8의2를 별표 6의2로 하고, 별표 6의2(중전 별표 8의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제8조의2 관련)

1.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기준

기준	평가 방법
1. 교통사고 위험지수 (ARI:Accident Risk Index)	인명피해 사고 건수 및 사망자·중상자수
2. 사고 유형	차대 차, 차대 사람, 차량 단독 사고 건수
3. 사고 원인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
4. 보행 조건	가. 보도와 차도 구분 여부 나. 횡단보도 보행신호 설치 여부 다.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물(보도용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 시설 등) 설치 여부
5. 도로 및 교통 여건	가. 과속방지를 위한 시설물(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등) 설치 여부 나. 도로구조상 운전자 시야 확보 유무 다. 기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여부 라. 도로폭, 차로수, 제한속도, 통행속도, 도로선형 등 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른 위험도
6. 그 밖의 기준	가. 교통법규위반 발생 빈도 등 단속 필요성 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요구 민원의 빈도 다. 지역주민 여론 수렴 결과 라. 현장 여건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마. 그 밖의 교통사고 위험도 등

비고

- 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거나 다른 지점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하되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 표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 나.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른 사고건수, 사망자·중상자 수 및 위반건수는 최근 3년간(조사 연도는 제외한다)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 다. 위 표 제1호의 교통사고 위험지수(ARI)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sqrt{KSI^2 + \text{사고 건수}^2} / \text{년}$$

※ KSI(Killed or Seriously Injured, 사고심각성 대표 지표): 사망자 수+중상자 수

※ 사고 건수: 인명피해사고 건수

- 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통사고는 각각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사고, 위 표 제2호의 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 중 차대 사람 사고 건수를 우선 고려한다.
- 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거나 다른 지점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및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 봉사 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바. 신설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시간교통량, 제한속도, 설계속도, 차로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운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설치 적정 여부와 이전설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 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단속 지점이나 단속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관리 기준

- 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은 장비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규격에 적합한 장비인지 인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단속장비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사 및 점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
-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대한 검사는 도로교통공단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기관을 통해 실시하되 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단속장비의 형식과 기능을 고려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③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시장등”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 ----- ----- ----- ----- ----- -----.
<신 설>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8의2의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삭 제>

말한다.

<신 설>

제28조(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 경찰 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 이 경우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행귀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해야 한다.

2.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운전자가 처음부터 제1호에 따른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이 아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

<u>제28조</u>(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생 략)	<u>한 측정</u> ② 그 밖에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u>제28조의2</u>(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현행과 같음)
---	--